

축산관계자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해외여행 시 출국 및 입국신고와 소독으로 구제역, HPAI 유입 차단하자



이상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휴대품검역과장/서기관/수의학박사

1. 들어가며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증권의 급격한 하락,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 대응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농림수축산 분야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 포천, 강화, 김포, 충주, 청양, 안동에 이어 올해도 전남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 그 발생원인 즉 유입원인으로 축산관계자의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 후 아무런 소독이나 조치를 받거나 하지 않고, 바로 농장에 출입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추정 제시하였다.

이에 국회는 축산관계자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공항만 검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반드시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7월 25일 시행토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축산관계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이 글을 쓴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상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와 소독 준수로 다시는 구제역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글머리에 먼저 밝혀둔다

2. 축산관계자의 소독 및 신고 의무규정

국제공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소독 절차는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실시하는 몸, 짐, 신발 소독과 골프화 및 골프채 소독 및 출국시 축산관계자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입국시 소독규정

공항만을 통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중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장을 방문한 일반여행객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의거 반드시 신고토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7조 및 제60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여행객이 상기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다. 개정된 법조항은 아래 표1와 같으며 확인서류는 입국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로 같음하고 있다.

표 1. 축산관계자 등의 입출입 신고 및 소독 관련 규정

<p>제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p> <p>(5)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p>
--

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출국시 신고규정

병역의무자가 외국에 나갈때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천국제공항 병무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6항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신고 방법 그림 1)하여야 한다.

즉, 축산관계자는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전화 신고(전화 : 1588-9060)접수도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3층 로비 데스크에 있는 신고함 (4군데 설치)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넣어도 된다.

그림 1. 해외출국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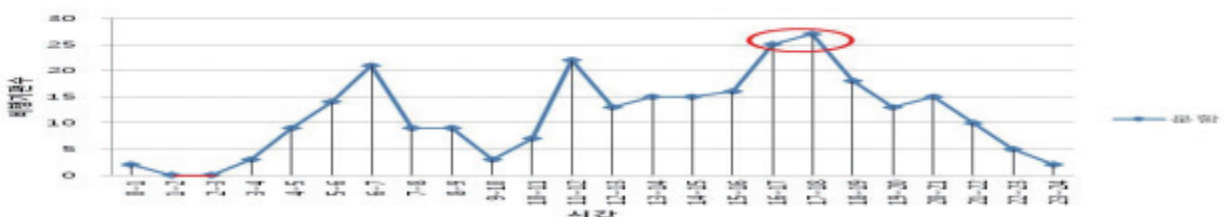
3. 외국여행 후 입국실태와 축산관계자 신고 및 소독실태

가.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실태(시간대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회수는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려 하루 평균 280여편이다. 그것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4시간 입항한다는 것이다. 24시간중 제일많이 입항하는 시간대는 15시에서 19시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른 새벽인 24시에서 4시까지지는 평균 5편정도가 입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표 2)를 참고기 바란다.

표 2. 인천 공항 여객기 운항실태

시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계
편수	2	0	0	3	9	14	21	9	9	3	7	22	13	15	15	16	25	27	18	13	15	10	5	2	273
점유율	2.6	0.0	0.0	1.1	3.3	5.1	7.7	3.3	3.3	1.1	2.6	8.1	4.8	5.5	5.5	5.9	9.2	9.9	6.6	4.8	5.5	3.7	1.8	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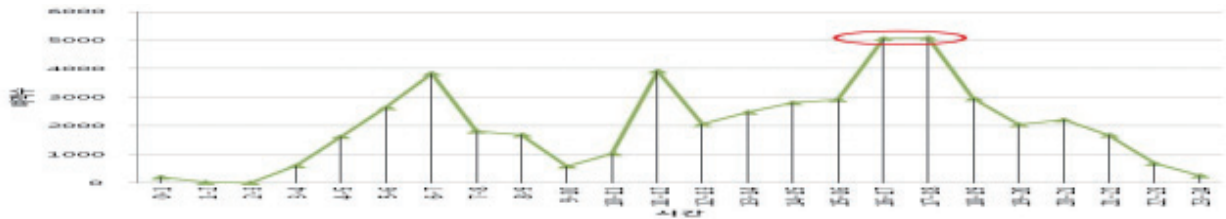


나. 인천국제공항 여객입국실태(시간대별)

인천국제공항에 하루에 입항하는 여행객수는 대략 5만명 정도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 입국편수에 비례하여 입항하고 있다. 휴가철에는 이보다 많은 7-8만명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3)

표 3. 인천공항 여행객 시간대별 입국실태

시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계
여객수	210	24	0	610	1622	2646	3831	1822	1686	583	1030	3916	2059	2475	2812	2917	5059	5074	2955	2047	2214	1676	694	263	48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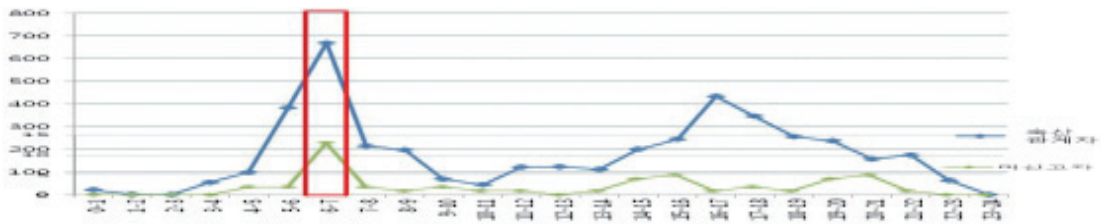


다. 축산관계자의 입국실태 (시간대별)

축산관계자의 입국은 아래표(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벽시간대에는 거의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아침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많이 입국하고 있다. 축산관계자의 입국신고와 소독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에 차질없는 업무수행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표 4. 축산 관계자 입국 실태

시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계
축산관계자	21	2	0	55	99	384	669	215	198	69	44	122	123	112	200	244	434	346	256	237	158	175	63	0	4226
점유율	0.5	0.0	0.0	1.3	2.3	9.1	15.8	5.1	4.7	1.6	1.0	2.9	2.9	2.7	4.7	5.8	10.3	8.2	6.1	5.6	3.7	4.1	1.5	0.0	100
미신고자	0	0	0	0	2	2	13(27%)	2	1	2	1	1	0	1	4	5	1	2	1	4	5	1	0	0	48



라. 축산관계자 입국신고 및 소독절차

축산관계자가 외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의 입국신고 및 소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의 표(표5)와 같다.

축산농가 또는 동거인이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하는 경우는 4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빨간색의 심사인을 날인하게 되고, **2단계**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홍보도우미가 축산관계자를 찾아서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로 안내하여 소독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3단계는 검역관이 입국자에정 정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가축시장 등의 방문금지, 귀국후 5일간 가축사육 시설 출입삼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의 해외여행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표 5. 축산관계자의 입국신고 및 소독절차

가축전염병 발생 내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대상 가축전염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정보의 출처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방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
출국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신고 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검사본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신고 (전산, 유선(1588-9060)) •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 신고함)
축산관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준수사항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 금지 ②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 삼가 ③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 ④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⑤ 입국시 신고 및 소독
출국신고 사항 확인 및 전산망 등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7조의4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신고서 및 출국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
입국 예정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검역관리시스템으로 입국예정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탑승객 명부, 출입국 자료 • 항공사(관세청협조) : 예약정보 • 공항공사 : 운항정보 • 외교통상부 : 여권정보
지자체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국예정정보 공문 발송 및 SMS 문자전송
발판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개소 35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트별 3~6개 설치 : 중앙 1개 발판에 소독약 투입, 그 외 미끄럼 방지용 • 8회/일 약 3시간 간격으로 소독액 분무
법무부 입국심사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입국심사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심사인 날인
검역신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도우미 배치, 휴대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유도 • 입국장내 안내방송 • 세관확인 : 세관신고서에 심사인만 있을 경우 우리소로 안내 • 소독을 받지않고 CIQ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 역진입 가능
입국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 및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입국신고
역학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7조의3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조치
소독실시(3분3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짐소독(자외선소독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와트 자외선 살균 등으로 소독 ◆ 전신소독(전신소독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A 유효 소독제(에코팜 200배 희석) 사용
교육 및 확인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7조의4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 철저 및 5일간 축산농장 출입 금지 교육 • 확인증 발급 및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날인 및 유지
행정사항 및 벌칙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검역시스템, 대장 등록, 지자체 통보 및 회신 •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에 거짓 답변,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기피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관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여행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관계자라 함은 가축(소, 산양, 돼지, 명양,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현재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축산관계자로 등록된 입국자 중에는 축산관계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누락되어 있는 신규축산인 등은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받아 데이터 처리를 하고 소독 및 교육을 시킨다. 또한, 축산은 직접하지 않지만 축산농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독을 받기를 원할 경우 소독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 4단계는 출구로 나가면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를 세관심사관이 파란색의 소독 도장 날인을 확인하고 최종 국내 입국을 허가한다. 만약에 소독조치를 받지 않고 나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다시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사무실로 인도하여 소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처음 입국시 신발소독부터 마지막 나갈때까지 관계기관간에 축산관계자에 대한 상호 점검으로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단계별 그림은 다음과 같다(그림2)

그림 2. 단계별 축산관계자의 신고 및 소독절차



이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법무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 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모든 축산관계자가 소독을 받고 입국하고, 출국할 때도 출국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온몸을 소독하는 전신소독기 8대, 가방을 소독하는 자외선 소독기 6대, 자동 손 소독기 10대, 반자동 신발소독기(플루건,10대), 골프소독용 기구 4대 등을 구비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7.25)이후 소독 및 신고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하루평균 160여명의 축산관련인이 입국하여 소독을 받고, 비축산 관련인도 30여명이 입국하여 소독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축산관계자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살면서 외국에 여행한

후, 소독을 자진하여 소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다

그림 3. 공항에서의 소독 실시내용



축산관계자 소독현황

사실 아래 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7.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시행이후 축산관계자, 동거가족, 외국인 근로자, 비축산관계자 등이 인천국제공항 검역검사당국에 신고하고, 소독을 받은 사람은 무려 38,373명이나 된다. 이를 하루로 계산한다면 평균 297명에 달한다. 우리 검역검사당국은 한정된 인력으로 눈코 뜰새없이 24시간동안 완벽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축산관계자는 입국시 신고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미신고하는 경우는 1일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표 6. 축산관계자 소독실시현황(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 시행이후)

(단위 : 명)

구분	기간	7.25~31	8월	9월	10월	11월
축산관계자		530	2,215	2,961	3,013	3,580
동거가족		493	2,513	1,641	1,450	1,524
외국인근로자(농업)		87	446	154	33	14
외국인근로자(제조,어업 등)		596	4,766	3,703	1,431	1,815
비축산관계자		291	1,105	963	728	2,147
소독거부 및 미신고자		10	108	74	47	43

다시 말씀드리면,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등에서 농업계통 산업근로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더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독거부 및 미신고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등 축산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세관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심사필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와 예정자 정보 전산시스템 지연 등으로 입국예정자정보에 이름이 누락되어 익일 확정자 명단에 정보가 뜰 경우, 축산관계자 D/B구축 이후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새로 갱신한 경우 및 D/B해당 축산관계자가 폐업 또는 전업으로 축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신고 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독 거부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관할 주소지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소독 및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4. 출국 신고 현황

축산관계자가 출국시 제출한 신고서는 정보화 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 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며, 방문한 출국 신고자에 대하여는 입국시와 동일하게 해외여행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국 신고한 축산관계자는 아래표(표7)와 같으며 인터넷 신고비율이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실적

(단위 : 명)

구분	기간	7.25~31	8월	9월	10월	11월
방 문		78	285	323	284	455
유 선		18	48	75	49	46
신 고 함		9	156	63	97	111
인 터 넷		211	801	680	642	622
계		316	1,290	1,411	1,072	1,234

5. 맺 음 말

해외여행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면 붉은색의 양탄자 같은 발판소독조가 눈에 보인다. 15명의 직원이 밤낮으로 24시간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소독하는 소독용 매트인 것이다.

그 만큼 중국, 태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가 한반도 주변에 있고 해외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시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여 국내 축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림수

산 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 검역검사소는 전신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대폭 확대 구비하고, 소독을 위한 홍보도우미를 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 검역관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발판소독조 등 소독기구에 대한 소독약 PH 5.0이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외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 자료에 의하면 해외여행객들이 가지고 오는 축산물에 의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비율이 60%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만큼 국제공항만의 국경검역은 가축전염병의 DMZ지역으로 국내방역의 최전방 수비수하고 할 수 있다. 공항만에서 사수가 안되면 언제 어떻게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로 침입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구제역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동남아 여행객이 1차 원인이라고 판명된 만큼 인천공항의 국경검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년의 쓰라린 구제역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전국적인 백신접종으로 대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지적이라도 다시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한 조직개편 즉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3개 조직을 통합되어 2011년 6월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출범하였으나, 자칫 잘못하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우리 축산관계자들에게 꼭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축산업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끔적이면 해외여행시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가피하게 여행을 한다면 가축사육농장방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우리 인천국제공항 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신고를 하신 후에는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소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소한 5일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